



교육부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2025. 7.

교 육 부
[영유아정책국]

차 례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3. 지원방안	1
4. 지원조건	3
5. 교부 및 집행관리	4
6. 정산 및 결과보고	5
7. 행정사항	6
8. 기대효과	6
9. 향후일정	6
[붙임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7
[붙임 2] 시도별 5세 무상교육·보육비 교부 예정액	9
[붙임 3] 7월분 학부모 부담금 반납 확인서	10
[붙임 4] 7월분 학부모 부담금 이월 확인서	11
[붙임 5] 7월분 학부모 부담금 집행계획서	12
[붙임 6] 5세 무상교육·보육 집행보고서	13
[붙임 7] 분기/월 기타필요경비 지원신청서(지자체용)	14
[붙임 8] 분기/월 기타필요경비 정산보고서(지자체용)	16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

1

추진배경

< 대통령 공약 >

- 유아·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확대

- 그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발생
-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지원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2

추진경과

- '유보통합 실행계획', '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추진 발표('24.6.27)
- '25년 국회 예산안 수정안, 5세 무상교육·보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목적예비비에서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24.12.10)
- 대통령 공약,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과제 포함('25.5월)
- 차관회의('25.7.24) 및 국무회의('25.7.29), 5세 무상교육·보육 예비비 배정 의결

3

지원방안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전국 공·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중 5세 유아('19.1.1.~'19.12.31. 출생아)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지원가능

- 상위연령 유아('18.1.1.~'18.12.31. 출생아)가 취학을 유예하거나, 하위연령 유아('20.1.1.~'20.12.31. 출생아)가 조기에 취학하여 5세 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등 지원
 -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기준 평균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과의 차액 11만원 지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2만원 추가(5만원→7만원) 지원
 - * 55.7만원(표준유아교육비) - 39.8만원(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 5만원(유아학비 추가지원금) = **11만원**
 - (어린이집)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기타필요경비* 7만원 지원*
 -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 어린이집 평균 기타필요경비 : **7만원**('24년 보육실태조사)
 - ※ (참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3~5세 누리보육료 외 소요비용(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현재도 표준보육비용(52.2만원) 수준으로 보육료 지원 중 (단,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등 기타필요경비는 발생)

□ 지원기간 및 소요예산

- (지원기간) 6개월('25.7.1.~'25.12.31)
- (소요예산) 1,289억원(6개월 분)
 - ※ 시도교육청(유치원 분) 905억원, 지자체(어린이집 분) 384억원

□ 지원항목

- (공립유치원 : 방과후과정비) 방과후학교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 밖의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유아학비 지원계획 상의 방과후과정비와 동일기준 적용
- (사립유치원 : 유아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및 산정방법, 지원절차는 유아학비와 동일 기준 적용

- (어린이집 : 기타필요경비)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기타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방법은 2025년 보육사업 안내와 동일 기준 적용

4

지원조건

-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정부 지원금 내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정부지원금 산정 방법 예시>

·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전

총 원비(A) (유치원/어린이집)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A-B-C)
	유아교육비·보육료(B)	5세 무상교육보육비(C)	
51만원/42만원	35만원	0원	16만원/7만원

·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후

총 원비(A) (유치원/어린이집)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A-B-C)
	유아교육비·보육료(B)	5세 무상교육보육비(C)	
51만원/42만원	35만원	16만원* / 7만원	0원

* 유치원·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중인 5만원 추가지원금 포함

-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및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가 5세 무상교육·보육비보다 적은 경우에도 전액지원(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가능
 - 현재 학부모 부담금 및 기타필요경비가 5세 무상교육·보육비보다 적은 경우, 학부모 부담 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출석 일수에 따라 지원항목 내에서 유아 직접 교육경비로 사용 가능*
 - *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간접비로 사용 불가
 - 7월분 학부모 부담금을 기 수납받은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납 또는 이월 여부 결정
 - 학부모 부담금이 무상교육·보육비보다 적어 이월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반납 또는 유아 직접교육비로 사용여부 결정
- ※ 공립유치원은 7월 분에 해당하는 방과후과정비를 '25년 연내 집행
- ※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반납 또는 이월 보고 예시 참고(붙임3~붙임5)

< (예시) 7월분 기 수납 학부모 부담금 처리 방법 >

① 학부모부담금이 무상교육·보육비를 초과하는 경우

구분	학부모부담금 기 수납분(A)	무상교육보육비 (B)	무상교육보육비 차감 후 학부모 부담금(A-B)	반납 또는 이월 선택	
				반납시	이월시(3개월간)
유치원	15만원	11만원	4만원	11만원	4/4/3만원
어린이집	10만원	7만원	3만원	7만원	3/3/1만원

* 11만원 또는 7만원을 학부모에게 반납하거나, 3개월에 나눠 학부모 부담금에서 차감

② 학부모부담금이 무상교육·보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구분	학부모부담금 기 수납분(A)	무상교육보육비 (B)	무상교육보육비 차감 후 학부모 부담금(A-B)	반납 또는 직접교육비로 사용 선택	
				반납시	이월할 금액 없음
유치원	10만원	11만원	-1만원	10만원	유아 직접
어린이집	5만원	7만원	-2만원	5만원	교육비로 사용

* 10만원 또는 5만원을 학부모에게 반납하거나, 유아 직접교육비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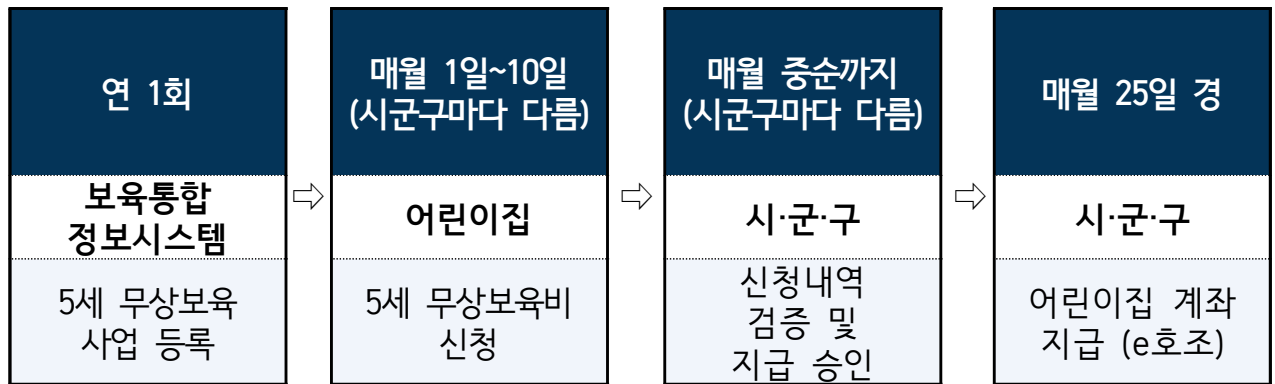
5 교부 및 집행관리

□ 지원금 교부 및 지급

- (교부방법)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전체 예산을 교부받아, 교육지원청(유치원분) 및 지자체(어린이집분)로 재교부
- (지자체) 시도교육청으로 5세 무상보육비 예산 교부 신청
- (교부시기) 분기별 교부('25년 7월, 10월)
- ※ 정산 제출 기한 등 고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교부시기 조정 가능
- (지원금 지급) 유치원은 유아교육비와 동일한 방식·절차로 지원금 신청·지급*,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지급**

*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청구 및 정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내 '5세 무상교육비' 별도 청구 메뉴 개설 예정)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5세 무상보육비 집행 업무 흐름도(예상) >



□ **집행관리**

- (자체계획 수립)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는 교육부 지원계획에 따른 자체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
 - (집행상황 관리)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는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집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 ※ 집행점검 결과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항목 외 사용 또는 기타 부정하게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변경 명령 또는 반환조치 등 실시

6 정산 및 결과보고

- (유치원·어린이집)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유아별 입·퇴원 및 출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정산 실시
 - (지자체)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25.10월, '26.1월) 2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 5세 무상보육비 정산 결과 제출
 - (시도교육청) 분기별 집행결과(지자체 집행결과 포함)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25.10월, '26.1월) 말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하고(붙임 3 양식), '25년 지원종료 후 최종 집행결과를 '26.3월 말까지 제출
- ※ 정산시기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조정 가능하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 집행결과 제출시기 준수('26.3월 말)

7

행정사항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이유로 기존 학부모 부담금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하지 않아야 함
 - ※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이후에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에 따른 원비인상 상한율 등 동일 적용
- 지자체는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이유로 기존 필요경비 수납한도를 인상하거나, 차액보육료를 감액하지 않아야 함
 - ※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지자체 차액보육료 지원 이후에도 발생하는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수납한도 및 차액보육료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적법·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8

기대효과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통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교육 완성, 국고 지원으로 국가책임형(공약) 영유아교육·보육 실현
- 유치원·어린이집 3~5세 학부모의 양육비 대폭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생애 출발선의 평등 실현에도 기여

9

향후 일정

- 교육부,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시도교육청 교부('25.8월 말)
- 시도교육청, 어린이집분 예산 지자체 재교부(~'25.9월 초)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월별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지급('25.9월~)
- 지자체, 어린이집분 분기별 집행결과 시도교육청 제출('25.10월 중, '26.1월 중)
- 시도교육청, 5세 무상교육·보육 분기별 집행결과 교육부 제출('25.10월 말 '26.1월 말)
- 시도교육청, 5세 무상교육·보육 최종 집행결과 교육부 제출('26.3월 말)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1>

붙임 2 시도별 5세 무상교육·보육비 교부 예정액

(단위 : 천원)

구분	공립유치원 (A)	사립유치원 (B)	어린이집 (C)	합계 (A+B+C)
서울	646,920	10,876,140	5,836,320	17,359,380
부산	299,640	6,246,900	1,510,740	8,057,280
대구	255,000	5,894,460	928,200	7,077,660
인천	402,120	6,539,280	2,173,500	9,114,900
광주	180,000	3,574,560	836,640	4,591,200
대전	130,800	3,531,660	699,300	4,361,760
울산	160,200	2,299,440	741,720	3,201,360
세종	277,920	3,960	567,840	849,720
경기	2,176,000	22,222,000	13,046,460	37,444,460
강원	279,960	1,732,500	1,275,540	3,288,000
충북	358,680	1,503,480	1,588,020	3,450,180
충남	363,000	3,124,440	2,270,520	5,757,960
전북	252,240	2,444,640	1,298,220	3,995,100
전남	370,320	1,686,300	1,698,900	3,755,520
경북	378,960	4,494,600	1,363,740	6,237,300
경남	468,360	6,433,680	1,985,340	8,887,380
제주	275,160	559,680	588,000	1,422,840
합계	7,275,280	83,167,720	38,409,000	128,852,000

붙임 3 **00유치원(어린이집) 7월분 학부모 부담금 반납 확인서 [예시]**

※ 시도별 자체계획에 따라 서식 추가·변경 가능

00 유치원(어린이집)

수신 △△ 교육감(△△ 시장)

(경유)

제목 00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반환 확인서 제출

1. 관련 : △△교육청(시청) 유아교육과-0000(2025.00.00)
2. 본 00유치원(어린이집)은 2025년 7월분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원비(기타 필요경비)) 전액을 다음과 같이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반환대상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31일		
반환 사유	2025년 7월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에 따른 기 수납분 반납		
반환 금액	총 반환 금액(원비(기타필요경비) 총액)		
	구분	총 수납액	반납액
	금액	원	원
반환 대상	구분	7월	
	5세 유아 수	명	

붙임 7월 학부모 부담금(원비(기타필요경비)) 반납 고지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끝.

붙임 4 **00유치원(어린이집) 7월분 학부모 부담금 이월 확인서 [예시]**

※ 시도별 자체계획에 따라 서식 추가·변경 가능

00 유치원(어린이집)

수신 △△ 교육감(△△ 시장)

(경유)

제목 00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이월(면제) 확인서 제출

1. 관련 : △△교육청(△△시청) 유아교육과-0000(2025.00.00)
2. 본 00 유치원(어린이집)은 2025년 7월분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원비(기타 필요경비)) 전액을 2025년 8월로 이월(면제)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월(면제) 기간	2025년 8월 1일 ~ 2025년 8월 31일		
이월(면제) 사유	2025년 7월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에 따라 기 수납분을 학부모 동의 하에 반납하지 않고 8월로 이월		
이월(면제) 금액	총 반환 금액(원비(기타필요경비) 총액)		
	구분	총 수납액	이월(면제)액
	금액	원	원
이월(면제) 대상	구분	7월	
	5세 유아 수	명	

붙임 8월 학부모 부담금(원비(기타필요경비)) 이월(면제)을 반영한 납부고지서 각 1부. 끝

붙임 5 **00유치원(어린이집) 7월분 학부모 부담금 집행계획서**

- ※ 시도별 자체계획에 따라 서식 추가·변경 가능
- ※ 7월분 기 수납 학부모 부담금을 반납 또는 이월하지 않는 유치원(어린이집)은 반납대상 금액을 추가 직접교육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집행 계획서를 교육(지원청) (시군구청)에 제출
(유치원)

구분		세부 내역	비고
항목	금액(원)		
일반교육 활동비	일반교육 활동비	·	
선택적 교육활동 비	방과후 교육·돌봄 비	·	
기타교육 활동비	기타 유아 직접교육 에 필요한 비용		
계			

(어린이집)

구분		세부 내역	비고
항목	금액(원)		
기타필요 경비	특별활동 비	·	
	현장학습 비	·	
	부모부담 행사비	·	
	아침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계			

붙임 6

5세 무상교육 · 보육 집행보고서 (작성기간 : '25.7월~12월)

(단위 : 천원)

교육명	구분	지원항목	예산 편지인원 (5세)	배정 예산 (A)	분기별 집행액								합계		집행액 (C=A-B)
					1분기(0~0월)		2분기(0~0월)		3분기(0~0월)		4분기(0월~0월)		평균 인원	집행액 (B)	
					평균 인원	집행액	평균 인원	집행액	평균 인원	집행액	평균 인원	집행액			
○○	유치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	-	-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	-	-	-							
	유치원 계				-	-	-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	-	-	-							
	어린이집 계				-	-	-	-							
	○○교육청 계					-	-	-	-						

붙임 7**[]분기/월 기타필요경비 지원신청서 (지자체 작성용)**

- 사업 목적(휴먼명조 15)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요청사유

-

 교부요청액

-
-

 예산소요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세 부 내 역

□ 교부금 세부 신청 내역

○ 총괄

(단위 : 천원)

전월(분기) 교부액(A)	전월(분기) 집행액(B)	집행잔액 (C=A-B)	당월(분기) 소요액(D)	당월(분기) 신청액(E=D-C)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원인원	소요액	비고
기타필요경비	5세			
계				

붙임 8**[]분기/월 기타필요경비 정산보고서 (지자체 작성용)****I. 총괄**

(단위 : 천원)

전월(분기) 집행잔액 (A)	당월(분기)교부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A+B-C)

II. 세부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합 계		비고
		지원인원	집행액	지원인원	집행액	
기타필요 경비	5세					
계						

III.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지원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IV.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시)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